우리당의 기본 이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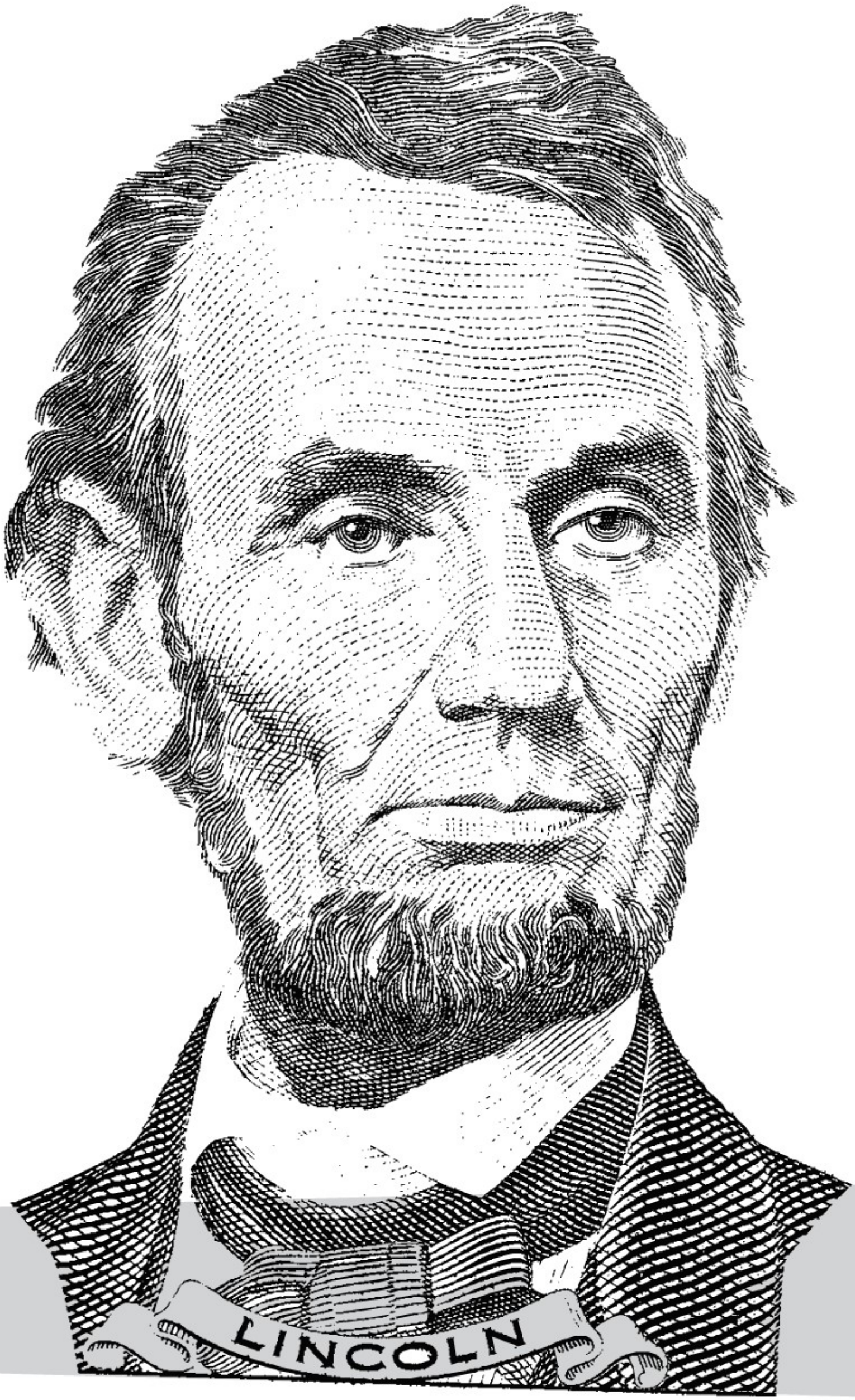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자유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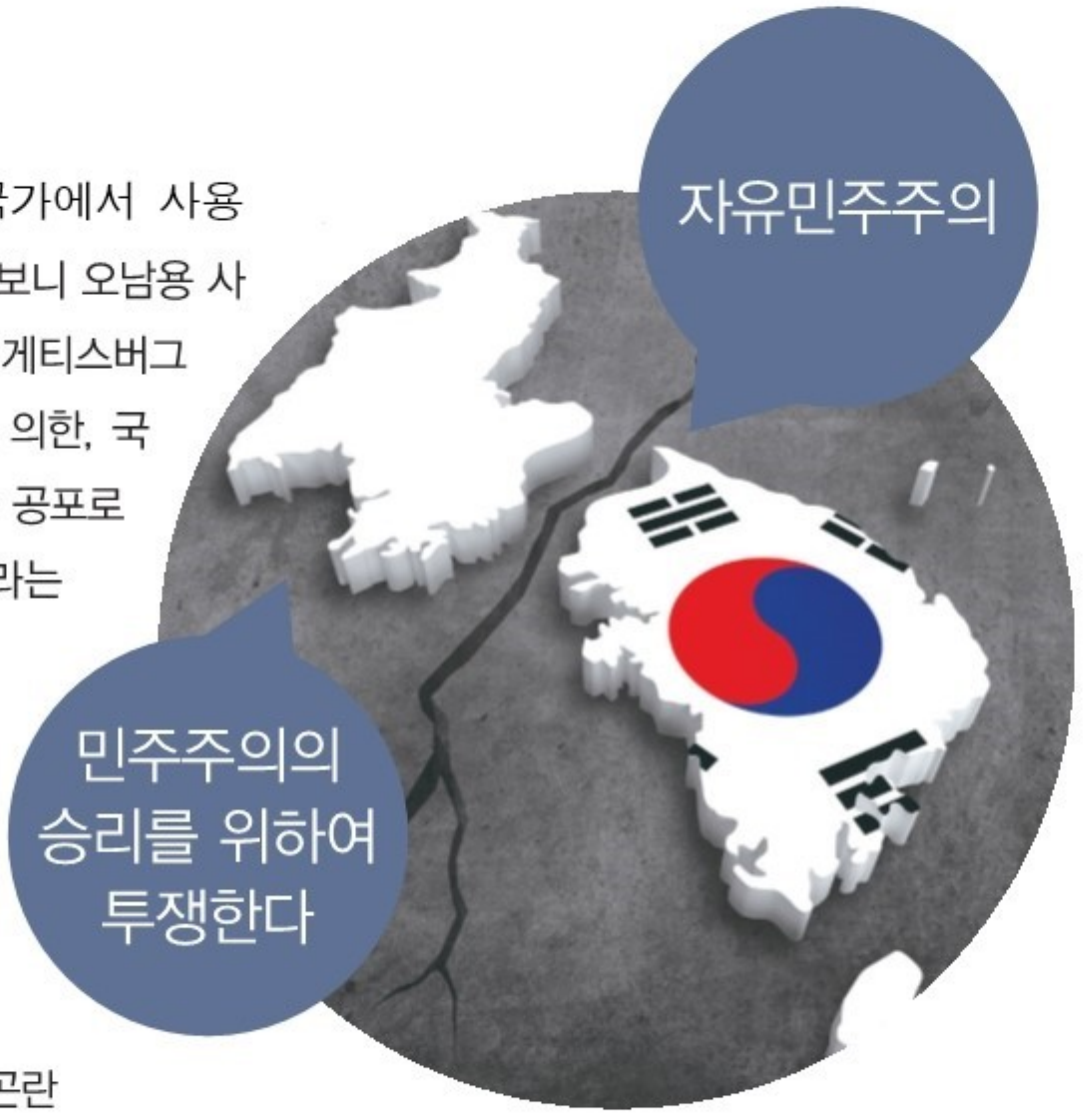

오늘날 민주주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오남용 사례도 심각하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로 규정한 이래 억압과 공포로 통치하는 독재자들조차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즐겨 사용해 왔는데, 북한도 조선 노동당 규약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가는 '여행용 가방'처럼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키고 가꾸어 왔던 민주주의는 신성함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헌법적 가치로서 그 내용과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단연 '자유민주주의'이다.

지배로부터의 자유,
대한민국 출범,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핵심적 용어는 자유다.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흔히 사람들은 자유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로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로서 '소극적 자유'라고 지칭해왔다. 그러나 자유에서 그런 소극적 차원 못지않게 중차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노예상태로부터 벗어나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지배로부터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했을 때의 자유의 의미다.

지배로부터의 자유, 즉 노예상태로부터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노예해방이 이루어진지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전체주의'나 '권위주의'처럼 통치자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공포스러운 현상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해 보면, 대한민국이 출범 초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정치적 이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단순히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절차민주주의나 선거를 통해 대표자들을 선출해야한다는 선거민주주의 수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대한민국이 추구할 자유가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함을 원칙으로 하는 '소극적 자유'를 금과옥조로 삼는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도 아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존재로 서로 소통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합의나 설득에 의해 결정하는 정치

자유 =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

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것을 아우르는 화두가 '자유민주적 질서'에서 뜻하는 '자유'다. '자유'의 개념에는 이처럼 중차대한 의미가 배어있는 만큼, '사회민주주의'나 '공동체주의'와 대비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이상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새장에 갇힌 새가 아니라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의 이미지를 투영하는 자유라는 이상은 고대로마의 자유의 여신인 '리베르타스(libertas)'의 이름에서 유래한 영어 '리버티(liberty)'라는 개념이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우리 사회에서 '자유로'나 '자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의 자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이다.

자유를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탱크앞에서
죽음도 불사했다.

이처럼 자유란 신(神)이외의 인간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으며, 신처럼 행세하는 통치자 밑에서 구차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다. 우리 독립 운동가들은 노예의 삶은 가당치 않다며 굴종으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했기에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임시정부를 세우는 등, 목숨까지 바치며 헌신했으며, 건국의 주역들은 북한지역을 제외하고 자유선거에 의해 단독정부를 세우는 일도 불사했던 것이다. 6 · 25남침 때도 그런 자유수호 의지가 결연했기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다고 해서 자유의 훼손이나 왜곡, 권위주의, 억압과 같은 저질스러운 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늘 단호했다. 북한의 주민들처럼 독재정권의 노예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 자유민주주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울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였고 지키고 가꿀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였으며, 그렇기에 사랑할 만한 가치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치야말로 자유를 보장한다.

법치주의

법치란 법에 의한 통치로서 이른바 '인치(人治)'와 구분된다. 인간에 의한 통치는 자의적이어서 자칫하면 변덕스럽고 사람에 따라 차별한다. 이에 비하면 법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에 의한 통치로서 비교적 공정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잣대가 통용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같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치야말로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가 제한되지 않으면 누구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자유의 역설'을 상기해본다면, 법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자유를 증진시키는 공동체의 오묘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요 웅변가인 키케로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법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라고 설파했을 것인가. 따라서 법치주의는 질서와 절제를 전제로 자유를 보장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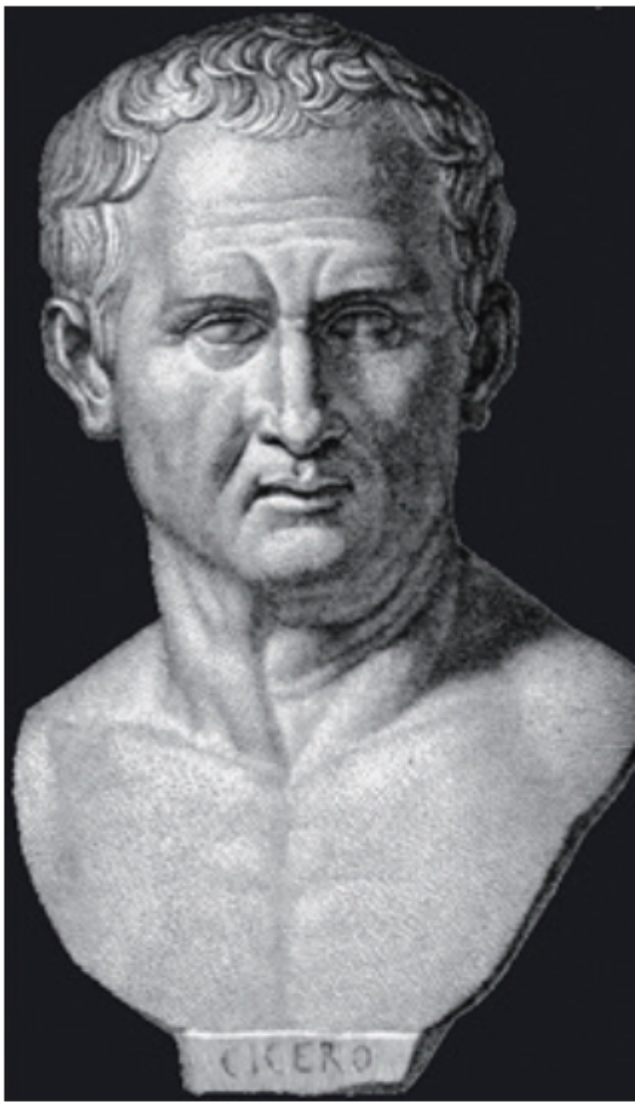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 법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요령 · 편법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법에 대한 존경심은 높지 않다. 공식적으로는 '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사적으로는 '요령'의 중요성을 더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이중성이 자주 발견된다. '법'을 배우기보다는 '편법'이나 '요령'부터 배우는데 익숙하지 않은지 성찰해볼 일이다. 그러다 보니 법대로 해야 할 중개사나 세무사, 혹은 변호사조차 고객들에게 법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요령'이나 '편법'으로 행동하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지 않는가.

그런가 하면 정의감이 있다거나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법에 대한 승복보다 법에 대한 불복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악법은 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유는 정의에 대한 승복이 법에 대한 승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법 복종 행위보다 불복종행위가 더욱더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으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의와 불의를 두부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어렵다. 우리는 "정의 아니면 불의"라는 이분법적 사회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가 함께 섞여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의 법안에도 합리적인 요소와 부조리한 요소가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가. 이처럼 판단이 명확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악법으로 단정하고 불복종행위를 벌인다면, 법치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

불완전한 부모에 대해 효를 행할 수 있다면, 불완전한 법에 대하여도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사회에서 법이 정의롭기 때문에 지킨다는 태도보다는 법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태도가 요청되는 이유다. 법이 옳으냐 그르냐, 정의로운 법이냐 악법이냐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법은 일단 지키고 본다는 태도가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그 이유는 어떠한 법도 정의냐 불의냐의 논란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치와 비슷하다. 우리가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재판의 결과가 항상 정의롭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판사의 판결에 오류의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오류가능성에 유의하면서도 재판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J. 롤즈와 같은 정의론자들이 말하는 '불완전 절차적 정의'의 의미이다. 법에 대한 승복의 태도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법의 오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에 복종할 때 비로소 법치주의는 살아 숨쉴 수 있다.

진정한 정치참여는 법을 지키는 것부터

법에 대한 승복의 태도가 민주사회에서 중시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진정한 정치참여는 준법행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치참여라고 말할 때, 흔히 투표행위나 공청회에 대한 참여, 혹은 집회나 시위에 대한 참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민주정치'의 본질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정치란 정파적인 행위에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일', 즉 공화정을 창안한 고대 로마인들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라고 불렀던 현상을 다루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민참여의 우선적 영역은 집회나 시위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대표적인 '공동체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지키는데 있다. 법이야말로 시민들 사이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공동체적 삶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가 민주사회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소비자의 주권**을 보장하는 기제로서
자유를 보증하는 **필수**적인 기제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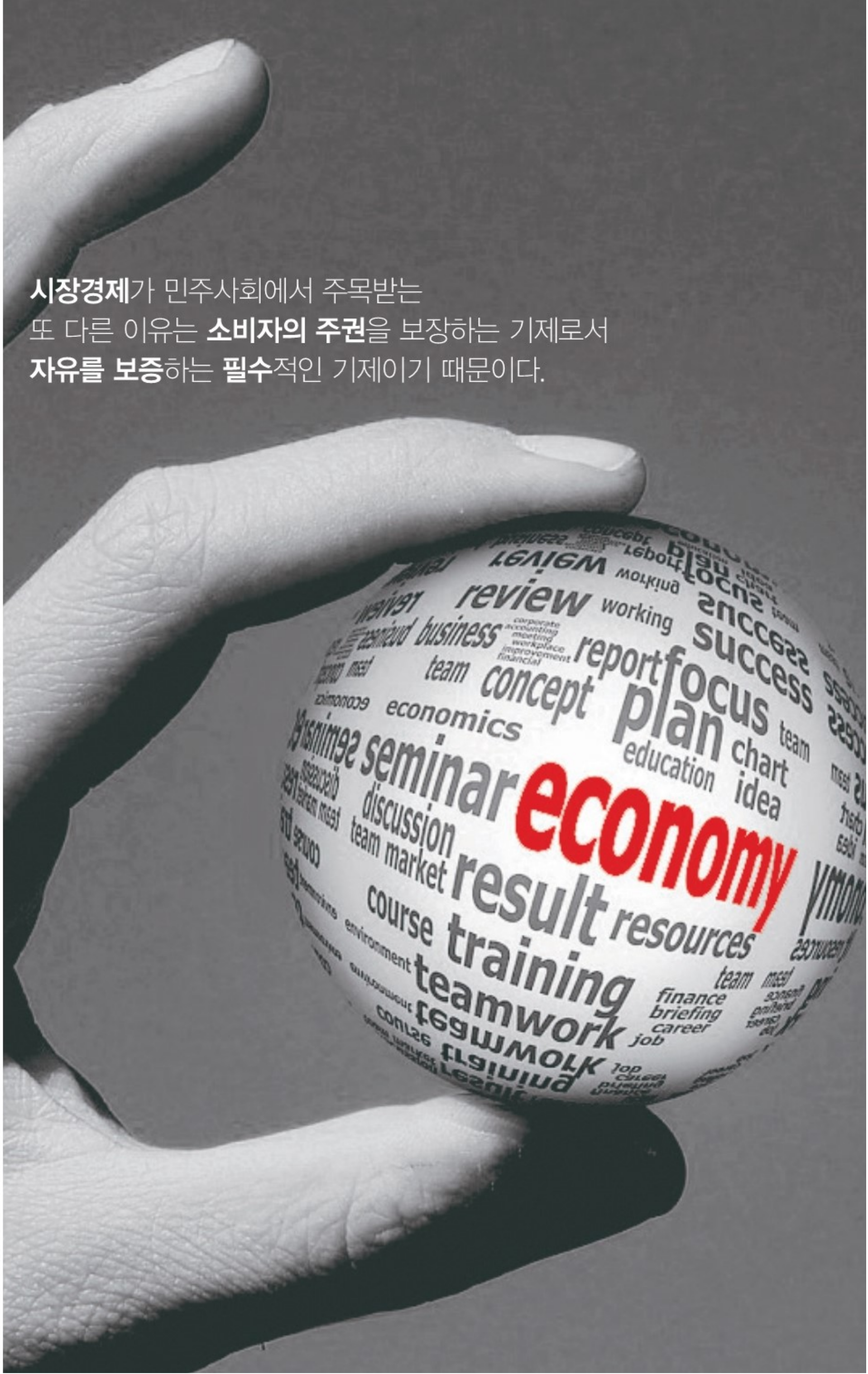

시장 경제

시장경제는 소비자의 주권이 중요하다

시장경제는 우리에게 삶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그 정확한 의미나 가치는 좀 더 주의깊게 반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장경제는 계획경제와 대비되는 말이다. 계획경제는 '계획자의 주권'이 강조되는 상명하달의 경제체제로서 '소비자의 주권'이 작용하는 시장경제와 다르다. 시장에서 선택권을 갖는 소비자의 주권이란 투표장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의 주권과 같이 갈수 있는 용어로서 시민들의 자유의 개념과 통한다.

물론 시장경제는 완전하지 않다. 오염된 강과 같은 공공재의 문제를 보거나 가짜 상품과 같은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를 보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칭되어온 시장은 불완전하다. 또한 가난의 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시장은 구매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뿐 사람들의 '필요'에 대응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고 빈곤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는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불완전성은 계획경제에 의하여 대체될 것이 아니라 정부개입에 의해 보완되어야하는 사안이다.

기업가정신에서 '창조적 파괴'와 '책임정신'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장경제의 기능은 이타심이나 희생정신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이기주의만으로도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형성시켜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갖게 되면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커다란 책임감을 통감하게 된다. '내것'이 아니고 '네것'도 아닌, 따라서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것'에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내집'은 깨끗한

데, 왜 '우리공원'은 더러울까. 가정에서는 식중독이 없는데, 왜 집단급식에서는 집단식중독이 발생할까. '우리의 것'에서는 얼렁뚱땅, 낭비, 도덕적 해이, 부주의 등이 나타나지만, '내것'에서는 책임의식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경제에서 보장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이다. 기업가정신이란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발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가정신'이라는 말에는 단순한 재주, 혹은 재능 이상의 의미가 배어 있다. 특히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포착하며 혁신적 전략을 원용하는 등, 창의성, 혁신, 모험적 태도 등, J. 슘페터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창조적 파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정신이다.

이 '기업가정신'은 기업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에서 주인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국민의 혈세로 지은 공항이 이용객이 적어 국고낭비가 발생할 때 우리는 공항건설을 결정한 정치인들에게 어떤 비판을 가하는가. '이것이 제 돈이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쓸 것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지 않는가. 시장경제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인 개개인들이 효율과 창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시현하는데 탁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많은 발명과 혁신,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제시 등이야말로 모두 '주인의식'과 '책임정신'에 근거한 기업가정신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시장이 기업가정신을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시장경제가 민주사회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소비자의 주권을 보장하는 기제로서 자유를 보증하는 필수적인 기제이기 때문이다. 흔히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유권자들은 4년에 한번 혹은 5년에 한번씩 선택권을 행사할 뿐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매일 시장에서 선택을 한다. 이보다 더 자유로운 선택권의 행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시장경제가 기능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유민주국가가 작동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는 반드시 시장경제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시장경제는 자유민주국가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주목할 때, 우리는 시장경제를 단순히 효율과 경쟁, 생산성 극대화라는 경제체제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유에 대해 갖는 사회정치적 의미와 기능에 있어서도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